

비공개 심사 신청 시 프로세스 변동 사항에 대한 안내

(23. 12. 21)

1. 지침 개정 이유

-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지침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비공개 승인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프로세스 변경 내용

- 변경 시행일 : '23년 12월 26일(화)
- 주요 변경 사항
 - 신청서 확인, 신청서 접수 등에 대한 반려 절차 마련(신설) 및 기간의 조정 등

| 연번 | 내용 | 기존 | 변경 | 비고 |
|----|---|--|--|--|
| 1 | <일부신설> 비공개 심사 신청서 확인 (보완 기간 및 횟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완횟수 : 관계자 간 보완 일정 협의 (최대 보완 가능 회수 미지정) ○ 보완 기간 : 관계자 간 보완 일정 협의 (회차 별 최대 보완 가능 기간 미지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완 횟수 : <u>최대 4차</u> 까지 가능 ○ 보완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: <u>최대 10일</u> - 2차, 3차 : 관계자 간 보완 <u>일정 협의</u> - 4차 : <u>최대 10일</u> ○ <u>각 차수 별 보완 기간 초과 시 자동 접수 반려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 접수 시 신청자료 부적정 사유 해당 시 주요 처리 절차·방식 마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* 신청자료 부적정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체자료기재제외물질 해당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MSDS대상물질 미해당 ④ 자진취소 </div> |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2 | <일부신설> 수수료 납부 기한 | ○ 카드 : - ○ 가상계좌(현금) : 30일 - 30일 초과 시 신청보완대기상태로 전환 | ○ 카드 : 15일 ○ 가상계좌(현금) : 15일 ○ 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기간 초과 시 자동 접수 반려 | ○ 수수료 납부 기한 일부 신설(카드) 및 대기기간 현실화 |
| 3 | <일부개정> 심사기준 불충족 사유 | ○ 신청인이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| ○ 신청인이 보완 요청을 보완기간 이내 따르지 않는 경우 | ○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일부 개정 |
| 4 | <일부개정> 이의 신청 검토 기한 | ○ 20일 내 검토 결과 통보 | ○ 14일 내 검토 결과 통보 *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통보 어려운 경우 기 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연장 가능(1회 한) | ○ 이의신청 검토 관계규정에 맞추어 현실화 |

[표 주요 변경 사항 정리]

3. 기타사항

○ 지침의 소급적용 관련

- 신청서의 확인(표 연번1) 및 수수료 납부 기한(표 연번2) 관련하여 본 지침 소급 적용에 따라, 시행 당일(23.12.26.) 진행 중인 보완 요청 차수는 1차로 일괄 변경, 결제 대기 상태 건의 납부 기한은 15로 변경

○ 시행 당일(23.12.26.)에 지침 반영에 따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여 진행 바람